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39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허영의원 대표발의(제220013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고려 사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각호 신설)	2

I. 허영의원 대표발의(제220013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5.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및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고려 사항 신설(안 제6조 제1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2. 다음 각 목의 지구·특구·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의 도시재생혁신지구 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호의 지역특구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시·도청(특별시청·광역시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u>특별자치시청·도청 및 특별자치도청을 말한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등의 협력기관과의 접근성</u> 4. <u>지역성장 거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u> 5. <u>기업등 입주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정주환경</u> 6. <u>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의 분포를 고려한 지역 간의 형평성</u> 7. <u>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 혁신도시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② 도시재생혁신지구, 연구개발특구, 지역특구,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③ 시·도청 및 학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④ 지역성장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 ⑤ 기업등 입주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⑥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의 분포를 고려한 지역 간의 형평성, ⑦ 그 밖에 혁신도시 조성·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산, 학, 연, 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도시로 계획된 도시로, 2007년 10개의 혁신도시 지구 지정¹⁾을 완료한 후 2019년까지 153개의 공공기관 1차 이전을 완료하였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차 이전에서 나타난 일부 한계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 조성 지역의 경제발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지구·특구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시·도청 및 학교 등의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접경지역 등의 분포를 고려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특정 지역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있어, 혁신도시의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목적²⁾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범위를 혁신지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기보유한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형평성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³⁾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⁴⁾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시 지역산업 발전,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혁신도시 지정’ 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발전,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문 의 처
02)6788-5581

참고 1

공공기관 1차 이전 현황(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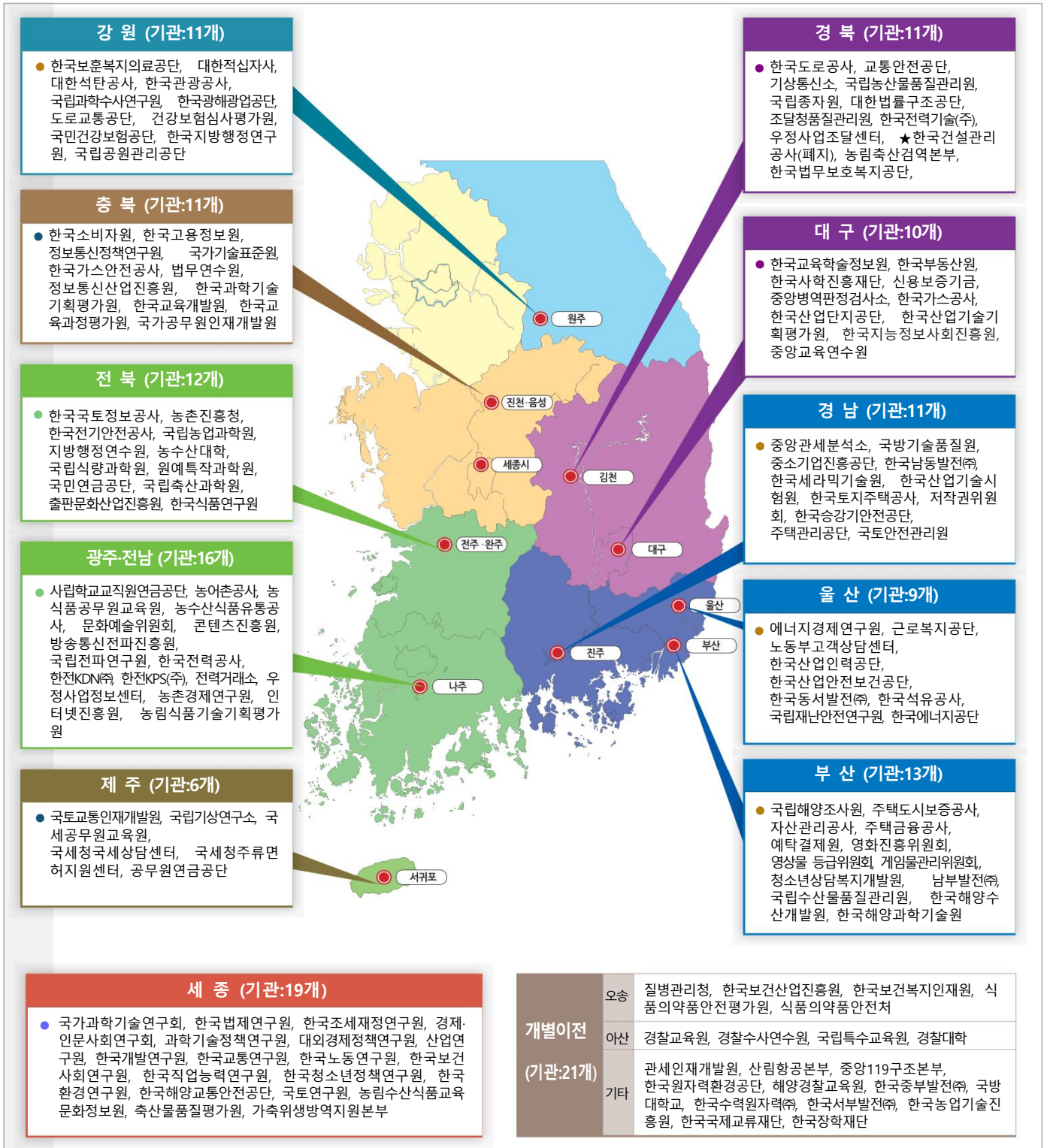
○ 150개 공공기관 이전 : 혁신도시 110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1개

구 분		이전 완료기관
합계(150)		150개
혁신 도시 (110)	계	110개
	부산 (13)	국립해양조사원('12.12), 영상물등급위원회('13.9), 게임물관리위원회('13.10), 영화진흥위원회('13.1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4.9), 한국남부발전(주)('14.10), 한국주택금융공사('14.11), 한국예탁결제원('14.11), 주택도시보증공사('14.12), 한국자산관리공사('14.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2),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12)
	대구 (10)	중앙병역판정검사소('12.12), 한국부동산원('13.8), 한국교육학술정보원('13.10), 한국산업단지공단('14.1), 한국사학진흥재단('14.3), 한국가스공사('1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4.9), 신용보증기금('14.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7), 중앙교육연수원('15.10)
	광주 전남 (16)	우정사업정보센터('13.3), 농식품공무원교육원('13.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2),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14.4), 한국콘텐츠진흥원('14.5), 국립전파연구원('1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8), 한국농어촌공사('14.9), 한국전력거래소('14.9), 한국전력공사('14.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4.12), 한전KPS(주)('14.12), 한전KDN(주)('14.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7), 한국인터넷진흥원('17.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9.1)
	울산 (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4.2), 근로복지공단('14.3), 한국산업인력공단('14.5), 한국동서발전(주)('14.6), 한국석유공사('14.11), 에너지경제연구원('14.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15.12), 한국에너지공단('19.2)
	강원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1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5), 대한석탄공사('14.12), 한국관광공사('14.12), 한국광해광업공단('15.8), 도로교통공단('15.11), 국민건강보험공단('15.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16.12), 국립공원공단('17.4)
	충북 (11)	한국가스안전공사('13.12), 국가기술표준원('14.5), 정보통신정책연구원('14.6), 한국소비자원('14.8), 한국고용정보원('14.9), 법무연수원('15.3),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6.9), 한국교육개발원('1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12)
	전북 (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13.8), 한국국토정보공사('13.11), 한국전기안전공사('14.6), 국립농업과학원('14.7), 농촌진흥청('14.7), 한국농수산대학('15.2), 국립식량과학원('15.3), 국립원예특작과학원('15.3), 국립축산과학원('15.3), 국민연금공단('1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5.7), 한국식품연구원('17.9)
	경북 (11)	우정사업조달센터('13.4), 기상청 기상통신소('1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12), 조달청 조달품질원('13.12), 대한법률구조공단('14.4), 한국교통안전공단('14.4), 국립종자원('14.7), 한국도로공사('14.11), 한국전력기술(주)('15.8), 농림축산검역본부('15.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3)
	경남 (11)	중앙관세분석소('13.1), 한국남동발전(주)('14.4), 국방기술품질원('1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4.7), 한국산업기술시험원('15.3), 한국세라믹기술원('15.3), 한국토지주택공사('15.4), 한국저작권위원회('15.6), 주택관리공단(주)('16.6), 한국승강기안전공단('16.7), 국토안전관리원('17.12)
	제주 (6)	국토교통인재개발원('12.12), 국립기상과학원('13.12), 국세공무원교육원('15.9),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5.9), 공무원연수원('15.9),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15.10)
세 종 시 (19)	19개	
	한국개발연구원('13.12), 한국법제연구원('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14.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14.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14.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14.12), 산업연구원('14.12), 한국교통연구원('14.12), 한국노동연구원('1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4.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14.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4.12), 한국환경연구원('14.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5.2), 축산물품질평가원('15.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5.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5.9), 국토연구원('17.1)	
개 별 이 전 (21)	21개	
	관세인재개발원('08.2, 천안), 경찰인재개발원('09.11, 아산), 국립특수교육원('10.11, 아산), 한국보건복지인재원('10.11,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11,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10.12, 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0.12, 오송), 질병관리청('10.12, 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11.3, 경주), 경찰수사연구원('13.7, 아산), 산림항공본부('13.11, 원주), 해양경찰교육원('13.11, 여수), 중앙119구조본부('14.11, 대구), 한국중부발전(주)('15.1, 보령), 한국서부발전(주)('15.8, 태안), 한국장학재단('15.11,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주)('16.3, 경주), 경찰대학('16.4, 아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8, 익산), 국방대학교('17.8, 논산), 한국국제교류재단('18.7, 제주)	

* '19년 말 기준 153개에서 기관 통폐합 2개** 및 재외동포재단 해산('23.6) 반영

** 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 한국시설안전공단(경남) = 국토안전관리원(경남)
한국광물자원공사(강원) +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 = 한국광해광업공단(강원)

□ 150개 이전공공기관 배치 : 혁신도시 110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1개



참고 2

혁신도시 지정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비교

구 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근거 법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 ~ 제2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제7조
지정 권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절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 ↓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관보 고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의견수렴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의결 (위원장 : 국토부장관) ↓ 관보 고시 등
지정 내용	1.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혁신도시법 제6조)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 3.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 지형도면 등
비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혁신도시 내에서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단계로 혁신도시 지정과 구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생략)	